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 연계성 강화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53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제2202553호)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 연계성 강화(안 제30조제2항 신설)	3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220255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5.
3. 회 부 일 : 2024. 8.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한편, 시장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어 해당 부속물과 시설이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여 예산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임.

이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성을 높이며,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여 도로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
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 간 연계성 강화(안 제30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 제30조¹⁾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생략) <u><신설></u>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조제2호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3)에 따르면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주차장·중앙분리대·통행료 징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이에 해당함. 현행법 제30조4)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운영 주체는 도로관리청임.

2)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안내소, 줄임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결(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4) 「도로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⁵⁾은 시장등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⁶⁾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신호기·신호등·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장등은 각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도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인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은 도로 유형에 따라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교통안전시설 설치주체는 시장·군수(일반적으로는 시장·군수에게 설치 권한을 위임받은⁷⁾ 경찰서장)임.

5)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 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6)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신호등) ①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안전표지)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다

【 도로 유형별 도로관리청 및交通安全시설 설치주체 】

구분		도로관리청 (=도로의 부속물 설치주체)	交通安全시설 설치주체
고속국도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 단, 경찰청과 협의 필요(도로교통법 제59조8))
일반국도	시외부	국토부장관	군수 ⇒(위임) 경찰서장
	시내부	시장	시장 ⇒(위임) 경찰서장
	국도대체우회도로	국토부장관	시장·군수 ⇒(위임) 경찰서장
지방도		도지사, 시장	시장 ⇒(위임) 경찰서장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구도		특별·광역시장, 시장, 군수	특별시장·광역시장 ⇒(위임)시·도경찰청장 시장·군수 ⇒ (위임)경찰서장

※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도로의 부속물과交通安全시설이 서로 연계되어 설치되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제21대 국회에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423호)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수정의결, 2021.3.19.)된 바 있음.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2023.2.16.) 되었으나 의결되지 못함.⁹⁾

음 각 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광역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에 따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交通安全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8) 「도로교통법」

제59조(交通安全시설의 설치 및 관리) ①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交通安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의 관리자가交通安全시설을 설치하려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432호)이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라는 점에서 연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계류시켜 계속심사하기로 하였는데, 최종적으로 다시 상정되지 않고 임기만료폐기됨. 제22대 국회에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交通安全시설의 종류 및 설치·관리 기준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65호)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임.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交通安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를 의무화 함으로써, 도로관리청과交通安全시설의 설치주체가 상이한 경우에도 도로의 부속물과交通安全시설이 유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제21대 국회에 심의·의결된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도로관리청이交通安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수정의결된 바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경우 이와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개정안 및 박완수의원안 대비표 】

현행	개정안	박완수의원안	박완수의원안 수정안 (국토위 의결안)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생략) <신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交通安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交通安全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 -----하

		<u><신 설></u>	며,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 라 <u>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u> ③ 제2항에 따라 도로관 리청으로부터 의견 제 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 터 20일 이내에 의견 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 로 본다.
--	--	---------------------------	---

다. 국토교통부 의견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각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 서로 연계되어 설치·관리할 필요성에 공감하나, ‘도로의 부속물’에는 도로안전시설 외에도 도로이용지원시설, 도로관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공작물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안전시설 등과 연계 설치될 필요성이 있는 ‘도로표지’에 한하여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5

참고

도로법상 도로표지 및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 비교

개 념

'도로표지'란 도로이용자가 도로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방향·노선·시설물 및 도로명의 정보를 안내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말함.(도로표지규칙 제2조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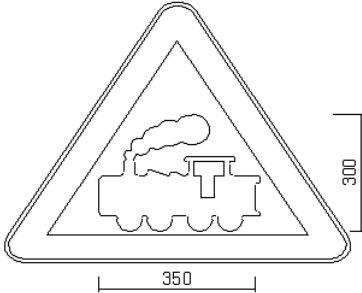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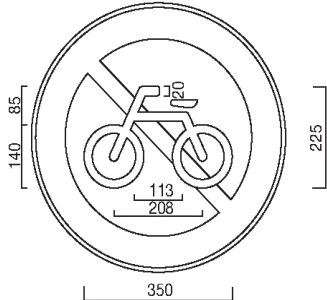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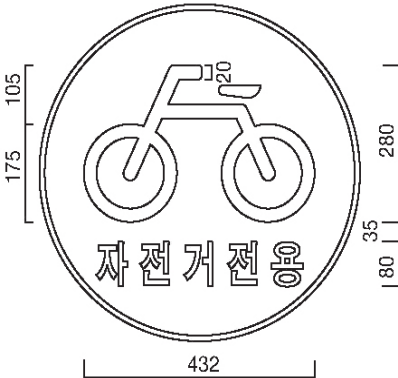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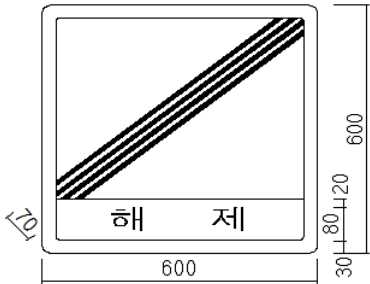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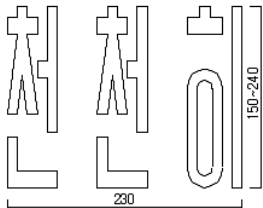
'안전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을 알리는 표지로서, 주의표지(위험을 알리는 표지), 규제표지(안전을 위한 행위 제한), 지시표지(통행방법 등을 지시), 보조표지(다른 표지를 보조), 노면표시(노면을 통해 안내)로 구분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사 례

1) 도로표지(도로표지규칙 별표)

표지번호 및 명칭	도로표지 규격 상세	설치방법 및 장소	비고
404-1 (A), (B) 단일 노선표지		- 설치간격은 4킬로미터로 하며, 이정표지와 다음 이정표지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 주요 교차로를 지나 100미터내외의 지점에 설치한다.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도 준용할 수 있다.
404-2 (A), (B) 중복 노선표지		- 일면으로 설치하며, 각각 주행방향의 오른쪽 길옆에 설치한다. - 육교나 고가도로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편지식 또는 복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표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종류	만드는 방식(단위: 밀리미터)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
철길건널목표지 (주의표지)		· 철길건널목이 있음을 알리는 것	· 철길건널목이 있는 지점에 설치 · 주행속도가 높은 구간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중복설치 · 철길건널목 전 50미터 내지 120미터의 도로우측에 설치
자전거통행금지표지 (규제표지)		·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	·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의 전면이나 도로의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 · 통행금지구간·기간 및 이유를 명시한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자전거전용도로표지 (지시표지)		·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하는 것	·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점 양측에 설치 · 구간의 시작 및 끝의 보조표지를 부착·설치 · 구간 내에 교차하는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우측에 설치
해제표지 (보조표지)		· 교통규제 또는 지시가 해제됨을 표시하는 것	·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규제 또는 지시내용 바탕에 사선을 겹치게 하여 제작·설치 · 해제되는 규제 또는 지시모양은 사선보다 얇게 할 것
서행표지 (노면표지)		· 차가 서행하여야 할 것을 표시하는 것	·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